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152

발의연월일: 2025. 3. 20.

발 의 자:양부남・김한규・박정현

민형배 • 전진숙 • 허성무

정진욱 • 박균택 • 안도걸

강유정 • 윤호중 • 조계원

권향엽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15부정선거에 항거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봉기가 일어난 지역은 광주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3·15의거의 지역적 범위를 마산지역으로 한정하고 광주를 제외하고 있음.

당시 광주시민들이 자유당 정권의 독재정치와 부정선거에 항거해 금남로 일대에서 일으킨 "곡(哭), 민주주의 장송" 시위는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고 많은 광주시민들이 부상을 당하고 사망하였음.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정의 규정을 정비하여 3·15의거의 정신을 전국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법률 제 호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마산지역"을 "광주 및 마산지역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3·15의	제2조(정의)
거"란 1960년 3월 15일부터 4	
월 13일까지를 전후하여 <u>마산</u>	<u>광주</u>
<u>지역</u> 에서 1960년 3월 15일 부	<u>및 마산지역 등</u>
정선거에 항거하여 발생한 민	
주화운동을 말한다.	